

의안번호	제 89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2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박상돈, 임영은, 이옥규,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허창원

1. 제정이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을 지원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공예문화산업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관련 규정(안 제5조)
-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마련(안 제6조)
-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관련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살 경우 「충청북도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의 공예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
2.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지역 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예품대전에 우수한 공예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도지사는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도지사는 공예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 안 제6조(재정지원)
- 안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 안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
- 안 제10조(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 안 제11조(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사업명	① 공예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0천원	- 도비	0천원
	②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27,000천원	- 도비	27,000천원
	③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28,000천원	- 도비	28,000천원
	④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40,000천원	- 도비	40,000천원
	⑤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10,000천원	- 도비	10,000천원

* 「공예문화산업 진흥계획(제4조)」은 기존사업인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52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135,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14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